

제131회 국회

국회 본회의 의회의록

제 20 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86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0차 본회의)

1.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2. 도서개발촉진법안
3.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4.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5.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6.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7.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8.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9.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0.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11. 표준시에관한법률안
1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
13.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14.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15.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16.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
17.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18.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1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0. 농지임대차관리법안
21. 대외무역법안
22. 도·소매업진흥법안
23.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2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
25.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
26.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27.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28. 최저임금법안(대안)
29.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
30. 폐기물관리법안
31.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32.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33.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34.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35. 해상교통안전법안
36. 도선법 개정법률안
37.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
38.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
39.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
40.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41. 측량법 개정법률안
42.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43.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44.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45.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46. 제법 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47.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48.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49.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50.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51.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52.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53.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54.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55.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56.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김찰청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2. 도서개발촉진법안(김재호·정시채·김현욱·박경석·조기상·고건 의원 외 39인 발의)	5
3.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4.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5.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6.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7.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8.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9.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10.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11. 표준시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9
1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정부 제출)	10
13.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이민섭 의원 외 33인 발의)	10
14.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15.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정부 제출)	11
16.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7.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1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19. 대외무역법안(정부 제출)	14
20. 도·소매업진흥법안(정부 제출)	15
21.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22.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23.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정부 제출)	17
24.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제출)	18
25.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제출)	18
26. 최저임금법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제출)	19
27.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28. 폐기물관리법안(정부 제출)	21
29.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30.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31.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32.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33. 해상교통안전법안(정부 제출)	24
34. 도선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35.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3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정부 제출)	26
37.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38.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39. 측량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40.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41.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42.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43.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44. 농지임대차관리법안(정부 제출)	37
45.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제출)	41
46.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정부 제출)	42
47.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3
48.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3
49.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3
50.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3
51.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3
52.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3
53.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44
54.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45
55.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45

(10시23분 개의)

○의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결할 정족수에는 약간 모자랍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의안을 오늘과 내일 중에 처리해야 합니다.

신민당은 정기국회 중에는 등원을 안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정파에서는 오늘 내일 다 출석해서서 의안 처리에 협력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각 정당 정파의 원래 총무직을 맡으신 분들은 수고를 해 주셔서 보고사항이

끝나면 곧 의안심의에 들어갈 것이니까 출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기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재형 보고사항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약간 모 자라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 나가 계신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정족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일 정 제1항을 상정해서 심사보고를 들으며 의결은 정족수를 이룬 후에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 주세요.

1.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38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개정법 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 나와서 심 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류상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현행 검찰청법의 조문 배열 순 서와 법체계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 을 통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 문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검찰청의 부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 으로 보할 수 있는 검사의 직급을 현행 고등검찰 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도록 복 수직제화하고,
둘째, 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의 직급을 검찰이사 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하며,
세째, 지방검찰청 지청의 사무국과 차장검사의 설치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네째, 검사임용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정 하도록 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31회 국 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무장관의 제안설 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 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축조심사 등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이 법안의 입법취지 는 타당하나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심 사보고를 하여 왔으며 12월 12일 제12차 법제사 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에 반 대토론과 표결을 거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3조제2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자’를 검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33조제1호 중 ‘(제3 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불필요한 것 으로 보아 이를 삭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수의견으 로,

첫째, 안 제7조의 제목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의 인수 및 이전권’으로 바꾸고 동 조 제1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규정을 검사직무의 독립성 보장이라 는 취지에서 이를 삭제함이 상당하고,

둘째, 안 제8조의 제목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 독’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로 바꾸 고, 동 조 중 ‘최고감독자로서’를 삭제하고,

세째, 안 제41조 중 검찰총장의 현행 정년 63 세를 65세로 하고,

네째, 안 제42조에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신설 하자는 그러한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참언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법제사 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

○의장 이재형 그러면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도서개발촉진법안(김재호·정시채·김현욱·박경석·조기상·고건 의원 외 39인 발의)
(10시43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항 도서개발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고건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의원 내무위원회 고건 의원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김재호 의원·정시채 의원·김현욱 의원·박경석 의원·조기상 의원·고건 의원 외 39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서 수많은 도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없어서 내륙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도서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는 도서를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국가의 계획적인 지원 아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의 범위와 개발의 목적과 내용을 정했고 개발이 필요한 도서를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도서개발의 사업계획은 시·도지사가 작성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정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 용자 또는 알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국가의 보조 비율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정도서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은 그 유효기간이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된 한시법으로서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서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도서개발촉진법안(김재호·정시채·김현욱·박경석·조기상·고건 의원 외 39인 발의)

(부록 1에 실음)

○의장 이재형 지금 심사보고한 도서개발촉진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49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항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제5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홍성우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의원 내무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실무 계층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숙련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위직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상향조정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 개정 골자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연령정년은 55세로 하되 개별적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본 개정안에서는 일괄적으로 3년을 연장하여 그 정년을 58세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변경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63년도 공무원정년제도를 도입한 이래 그동안 국민의 평균수명이 많이 신장되었고 또한 정부의 기능도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숙련 인력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상향조정하여 실무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3건 부록 1에 실음)

.....

○의장 이재형 3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씩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역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6항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영화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화 의원 내무위원회 안영화 의원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총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총포의 개조 금지 및 검사규정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할 수 없도록 하였고,

둘째, 공기총의 소지허가는 경찰서장이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교육에 있어서도 소지허가권자인 경찰서장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총포의 제조품이나 수입품에 대하여 이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여 합격되지 아니한 총포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대상 기준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포

의 소지자가 임의로 개조하는 것을 규제하고 제 조 또는 수입한 총포에 대하여 개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총포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보완 조치로 판단하고 공기총의 허가에 따른 교육에 있어서도 그 허가와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

○의장 이재형 그러면 지금 보고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58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인 구용상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용상 의원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따라 세목체계를 개정하며 세부담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토지의 과다점유

및 토지투기의 억제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토지합산과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구 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특별시세·직할시세·도세 및 시·군·구세의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둘째,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과 기타 특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의 시행기간이 198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조정하고,

세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 기준의 자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한편 재산세를 대형주택에는 중과하고 소형주택에는 경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최저세율 적용 대상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넓은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네째, 담배판매세의 세율을 시는 2%에서 22%로, 군은 22%에서 55%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

다섯째, 토지수급의 원활화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0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개정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개정하려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고 이에 따라 일부 조항을 조정하였으며,

둘째, 대도시 내에서 비영리사업자에게 등록세를 과세하는 경우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세째,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 토지 신고를 당해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명확히 한 것 등이며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참 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의장 이재형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형 그러면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3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8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徐廷華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徐廷華 議員 재무위원회 徐廷華 의원입니다.

1986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의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국민경제상 장기·안정적인 확보를 요하는 주요 자원에 대해서도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나라가 출자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국내기업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수출입은행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7분)

○의장 이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간사인 김규원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재무위원회 김규원 의원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6월 1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에 따르는 비상업적인 분야에서의 위험의 보증을 통하여 민간재원의 국제적인 이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투자보증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가 출자하는 대상인 국제금융기구에 새로이 국제투자보증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
○의장 이재형 그러면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
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11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0항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배 의원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1986년 1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
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
에서 동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동 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
며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
면,

첫째,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
환하는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
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
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
한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 또는 사용
하고 있던 소규모 잡종재산을 그 점유 또는 사용
하던 자에게 이 법 시행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매
각하는 경우에는 연 5푼의 이자를 붙여 5년 이하
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매각
가액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며,

셋째,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
고 있는 자에게 동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매
각 또는 대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유 또는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렸읍
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
○의장 이재형 지금 심사보고드린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표준시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1시14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1항 표준시에관한법
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간사인 이진 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장, 최영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진 의원 경제과학위원회의 이진 의원입니
다.

지금으로부터 표준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9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
되어 동년 9월 2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
습니다.

이 법안의 제출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
면,

첫째, 표준시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
자오선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고,

둘째, 여름기간 동안 일광절약시간제, 이른바
썸머타임의 실시를 위하여 연중 일정기간의 시간

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제, 현행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은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도가 실시될 경우에 생활시간과 일출시간 과의 조화로 근면한 국민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 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법안은 11월 21일 소위원회에서 원안에 동 의키로 의결하고 또한 12월 10일 제9차 경과위원 회에서 원안 의결 후 법제사범위원회의 자구 수 정을 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무쪼록 저희 경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표준시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제과학위원회)

표준시에관한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표준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정부 제출)

(11시17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12항 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간사이신 이진 의원 다시 나오 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의원 경제과학위원회의 이진 의원입니 다.

지금으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서 동년 11월 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 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된 프로그램의 유통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작을 유도하 는 한편 국내외 프로그램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 여 산업발전과 기술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프로그램보호제도와 함께 국내 소프트 웨어산업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적극적인 육성, 지원시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면서 외국 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자 1987년 7월부터 시 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6인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수정이유와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프로그 램 저작권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 하여 과학기술처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 심의위원회를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토록 함과 동시에 심의기능의 유연성을 부여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만을 마련 하고 프로그램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과학기술처장 관과 문화공보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토록 하였 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 심사보고서
(경제과학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에 대 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이민섭 의원 외 33인 발의)

(11시20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13항 대한교원공제

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정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의원 문교공보위원회의 정남 의원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1986년 11월 19일 이민섭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대한교원공제회 회원은 현직 교직원 등만이 될 수 있던 것을 퇴직 교직원 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확대하여 이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 관계 규정을 보완하여 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 조)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교공보위원회)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민섭 의원 외 33인 발의)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22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일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운 의원 문교공보위원회의 김일운 의원입니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

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한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 취득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제131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이 올림픽선수촌 및 기자촌 건립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교공보위원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동 개정법률안은 제20항 농지임대차관리법안과 함께 다른 법률안에 대한 처리를 끝낸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

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정부 제출)

(11시26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16항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이신 조상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 농수산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입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수입부과금 및 자금관리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으로 조성하고,

둘째, 수입부과금은 농수산물수입액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되 부과징수율은 국내외 농수산물 등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금은 농지구입 농어촌공업육성 농어촌의 편익시설 및 복지기반의 확충과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 등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기금운용계획은 경제기획원에서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제13차 농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위원회)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부의장 최영철**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29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17항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이신 조상래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 농수산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1983년 12월 31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저촉,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아울러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개발공사의 명칭을 동 공사가 현재 주로 진행 중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과 유통개선사업 기능에 부합하도록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 공사의 자본금이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법 제정 당시의 100억 원으로는 과소하여 동 공사의 사업수행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8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위원회)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철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32분)

○부위원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18항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의원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입니다.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지를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함으로써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초지조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초지조성 농가의 편리를 기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농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 초지조성 허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지조성의 적지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일반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할 경우 임대차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단지 조성 지구의 대리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초지조성을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허가청으로부터 초지조성 허가를 받는 경우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네째, 농수산부장관의 초지전용허가권을 초지가 2개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와 도가 직접 초지를 조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초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제13차 농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위원회)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철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36분)

○부위원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19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의원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에 맞추어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개설자의 도매시장 관리기능을 보강하여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개설자가 종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부류별로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개설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하고 부류별로 적정수의 지정도매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여금 거래질서 유지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 참가인 등록 등 그 권한의 일부를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설자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법 거래행위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매업(仲買業)의 정의도 규정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제13차 농수산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산물 유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매시장 육성에 필요하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수산물위원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외무역법안(정부 제출)

(11시39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20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21항 대외무역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양경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자 의원 양경자 의원입니다.

대외무역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7년에 제정된 현행 무역거래법이 수출진흥과 수입조정 등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관리무역체제를 기조로 하고 있어 오늘날 대외개방정책 방향에 맞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상응하도록 현행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업계의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무역업체수의 증가 및 선진국의 수입규제 등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입질서를 강화하고 공정무역을 구현하는 등 선진 무역 관행을 도입함과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현행 무역거래법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통폐합하여 새로이 대외무역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대외무역을 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거래 형태 또는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수출입의 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되 국산의 원료, 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선진무역국의 제도와 같은 산업영향조사제도를 신설하고 수출입질서 유지와 공정무역의 구현을 위한 선진 무역제도를 도입하며,

넷째, 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 내실 있는 수출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

제도를 신설하고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출 조합 및 수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6년 11월 20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의 9인 소위를 구성하여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켜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이 법안 심의소위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제1호를 수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무역업 허가 없이 현행대로 자기수요를 위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9조제5호를 수정하여 현행 무역업 허가 면제의 특례를 전부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12조제2항을 수정하여 무역업 허가 취소 등을 당한 자에 대해서도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서는 부품 등 중간재의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 및 자구 수정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외무역법안 심사보고서

(상공위원회)

대외무역법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대외무역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도·소매업진흥법안(정부 제출)

(11시44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22항 도·소매업진

흥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고귀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귀남 의원 상공위원회 고귀남 의원입니다.

도·소매업진흥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시장법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도·소매업 진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새로 도·소매업진흥법을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도·소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장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이나 도매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시장의 매장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가 설립한 법인 또는 당해 시장 안의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조합이 시장의 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시장관리자 시범도매센터 지정연쇄화사업자 및 상점가진흥조합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세제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뿐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판매 채무보증 할부판매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1월 21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9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제1항제1호를 수정하여 시장관

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시장개설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시장관리자를 사후 지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안 제10조를 수정하여 시장 매장 면적 축소의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여 시장의 기준 면적 유지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부칙 제1조를 수정하여 이 법 시행일을 1987년 7월 1일부터로 함으로써 현행 시장법에 의한 요건 미구비 시장을 현실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네째,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현재 시장관리를 잘하고 있는 시장번영회 등의 단체가 본 법안에 의해서도 시장관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소매업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상공위원회)

도·소매업진흥법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부의장 최영철 도·소매업진흥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50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23항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조경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목 의원 상공위원회 조경목 의원입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0월 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0월 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품질표시제 품질검사제 품질관리등록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수입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상품에 대해서 품질표시 및 품질검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서 9인의 법안소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안을 회부하였고 소위원회에서는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켜 축조심의를한 결과 정부 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해서 그 결과를 1986년 11월 26일 제14차 상공위원회에 보고한바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품질검사 불합격품을 공진청장이 비상사태나 내수에 현저한 수급차질이 있을 경우 이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배제함으로써 공산품의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기하겠다는 본 법 개정의 기본취지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약간의 법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공위원회)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부의장 최영철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공위원회)

22.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53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24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이신 신민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선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8일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61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중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상표사용이나 상표거래 등으로 인한 국제간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국제신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조·모조 상품에 대한 행정지도를 겸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표식의 제거 등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과 업계 간의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을 자문하는 부정경쟁심의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내용상 변경 없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영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정부 제출)

(11시56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25항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재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의원** 상공위원회 김재호 의원입니다.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른 외국인의 출원 증대와 국내 공업소유권제도의 인식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에 따라 특허 등의 출원이 급격히 증대되었습니다. 이는 이에 대한 처리능력은 한정되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특허행정의 회계제도를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특허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상공위원회)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

(참 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제출)

25.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제출)

(11시59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26항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찬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및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5년 11월 29일 김완태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2월 13일 함중환 의원 외 20인이, 1986년 3월 29일 권중동 의원 외 36인이 각각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86년 4월 7일 제129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임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차에 걸쳐 동 개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에 대하여 3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개정안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1986년 12월

10일 제131회 국회 제14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3건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급 노조 연합단체는 단위노조에 대한 지도 협조 지원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에 대한 제삼자의 개념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하였고,

둘째, 노조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비 중 일정률 이상의 조합비를 조합원의 복지후생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노동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은 시정명령 이후가 아니면 행할 수 없게 하였고,

넷째, 상급 노조 연합단체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단위노동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때는 행정관청에 신고만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상회복과 처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되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등입니다.

다음은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5년 11월 13일 김정수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2월 13일 강경식 의원 외 20인이, 1986년 3월 29일 강창희 의원 외 36인이 각각 발의하여 3건의 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1986년 4월 7일 제129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개정안의 심사를 의뢰하였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차에 걸쳐 동 개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에 대하여 3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3건의 개정안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 1986년 12월 10일 제131회 국회 제14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3건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준공익사업 지정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

제하고 공익사업의 개념 및 범위를 명문화하고,
둘째, 상급 노조 연합단체는 단위노조에 대한 지도 협조 지원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에 대한 제삼자의 개념에서 이를 제외하며,

세째, 노동쟁의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의 냉각기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라 알선기간도 단축하며,

네째,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쌍방이 신고토록 하던 것을 당사자 일방이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토록 하고,

다섯째,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를 공익사업에만 한정하는 등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는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보건사회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보건사회위원장)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부의장 최영철 그러면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은 쉬었다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후 2시 속개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고 의결정족수에 유념하셔서 걱정이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26. 최저임금법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제출)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28항 최저임금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강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희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강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복지사회의 건설과 관련하여 근로복지의 중요과제인 최저임금제도가 그동안 사회·경제적 여건의 미성숙을 이유로 그 실시가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사 간의 갈등 해소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나아가서는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보건사회위원회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안이 1986년 3월 11일 정시봉 의원의 20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0월 23일 심완구 의원 외 88인이, 또한 동년 11월 20일에는 강창희 의원 외 36인이 각각 발의하여 3건의 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시봉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1986년 6월 21일 제130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986년 4월 7일 제129회 국회 5차 위원회에서 구성된 바 있는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위임하였고, 심완구 의원 외 88인 그리고 강창희 의원 외 36인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1986년 11월 27일 제131회 국회 제1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역시 이미 구성된 바 있는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86년 12월 10일

동 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일한 제목의 법률 제정에 대해서 3건의 법안으로 제출 되었으므로 각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 1986년 12월 10일 제14차 위원회에 심사보고하여 이를 채택함으로써 3건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법의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둘째,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결정토록 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결정하게 하였고,

네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재심요청권 및 노사대표의 이의제기권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공익대표 각 9인으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섯째,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최초의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1987년 7월 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동년 12월 15일까지 결정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최저임금법안(대안)
(보건사회위원장)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최저임금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32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29항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집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 능력을 잃은 자 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으로 하고 가입자의 종별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며,

둘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하고,

셋째, 비용부담을 근로자 및 사용자가 균형 있게 부담되 퇴직금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전환토록 하며,

네째, 국민연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및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2월 10일 제14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진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이 국민의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사고로 소득능력을 잃은 자 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철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폐기물관리법안(정부 제출)

(14시39분)

○부위원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30항 폐기물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정시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시봉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산업폐기물 외의 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그 관리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넷째,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다섯째,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11월 27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법안의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하고 11월 28일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폐수정화시설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고,

둘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폐기물관리법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폐기물관리법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철 폐기물관리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41분)

○부위원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31항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이병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직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이병직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만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새로운 합성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금지 등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야생 동식물류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취·포획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셋째, 일정한 지역과 동 지역 안의 일정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간과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이 일치하도록 배출부과금의 기산일을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로 하도록 하며,

다섯째, 새로운 합성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조·수입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1월 27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하고 11월 28일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처분의 제척기간, 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 시점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였고,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제안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것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부의장 최영철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46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32항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4년 7월 23일 우리나라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6년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기준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박의 기름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름의 범위를 종래의 원유·중유·유탄유 등 중질유로 국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휘발유·경유·등유 등 경질유를 추가하여 규제대상 기름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선박의 기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선박 내에 선저 폐수 배출 방지장치만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물 밸러스트 배출 방지장치, 분리 밸러스트 탱크, 화물창, 원유세정설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세제, 선박 소유자는 선박 내에 설치한 해양오염방지장치에 대하여 정기검사·중간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동 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은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내재, 기름기록부·폐기물처리기록부의 비치의 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위반자의 전과자화를 막고 행정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1월 27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개정법률안을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하고 11월 28일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동 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있어서 여타의 환경관계 법률안 등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벌칙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1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철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부위원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33항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봉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철도소운송업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면허권을 철도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면허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제도와 청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문제점이 없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정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철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54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34항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봉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선박설비와 만재흡수선의 기준을 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해운항만청장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는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6조의2제1항을 수정하여 우수제조사업장에서 제조되어 선박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안 제7조의3 및 제9조제4항을 수정하여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이 확인된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증인(證印)을 붙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해상교통안전법안(정부 제출)

(14시56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35항 해상교통안전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표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여 법적 근거의 미비로 해상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이 결여되어 해상교통안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1977년부터 발효된 국제해상충돌예방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는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4조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난신호를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로 수정하였고,

둘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선박의 침몰 등으로 통항이 곤란한 경우 통항의 제한권을 해운항만청장에게만 부여하도록 안 제49조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해상교통안전법안 심사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해상교통안전법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해상교통안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도선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36항 도선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표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도선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도선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강제도선대상 선박의 t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는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를 수정하여 도선사의 정년연장대상자를 65세가 되는 날 이전에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하여 그 대상을 완화하였고,

둘째, 도선사 면허의 갱신시험 대상자의 범위를

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안 제8조제2항을 수정하였으며,

세째, 이 법의 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면허자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 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선장으로서의 승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 수정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도선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도선법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도선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37항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균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김정균 의원입니다.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별개의 법에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여 관광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불합리

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세 차례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는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목적규정을 이 법의 내용과 체계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사업의 종류별 정의규정을 삭제하여 제3조에 관광사업의 종류 규정을 신설 이에 포함시키고 안 제19조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3조의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

○부위원장 최영철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정부 제출)

(15시7분)

○부위원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균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

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균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김정균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의 교통인구의 증가와 자가용승용차를 비롯한 자동차 보유 대수의 증가로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교통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시설의 투자와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교통기본계획제도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교통개발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세 차례의 위원회를 열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는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2호의 교통시설의 정의규정에 주차장을 삽입 수정하였고,

둘째,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허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인 교통개발연구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법인승계절차 규정을 부칙 제2항에 신설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도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

○부위원장 최영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1분)

○부위원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39항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이신 진치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치범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명칭을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2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와 11월 26일 제13차 위원회 및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는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5조제2항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제1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과 맞추기 위하여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도록 제27조제4항을 수정하였고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철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4분)

○부위원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40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이신 진치범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치범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자동차운수사업의 자율화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비사업자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2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와 11월 27일 제14차 위원회 및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는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에 법인의 임원 중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제5조제4호를 수정하였고,

둘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27조제2항 단서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부의장 최영철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측량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7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41항 측량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익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박익주 건설위원장 박익주 의원입니다.

측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제도의 발전과 측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시책을 강화하고 측량기술자 면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며 측량의 개념을 실시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측량과 공공측량 두 가지로 분류하

고 있는 측량의 개념을 실시주체에 따라 국립지리원이 실시하는 측량을 기본측량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은 공공측량으로, 그리고 사기업과 개인이 실시하는 것은 일반측량으로 구분을 하였으며,

둘째, 건설부장관에게 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도입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책임을 부과하고,

셋째, 건설부장관의 권한 중 공공측량 성과의 심사, 영업실적 신고의 수리 및 측량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측량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되 보수교육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경미한 업무이행을 하지 않는 측량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앞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하여 1년 이내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다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동시에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을 하고 그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5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1990년부터 실시한다는 측량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 법 시행일부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등록취소 사유와 벌금액을 부분적으로 완화를 하며 기타 미비한 법체제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기준에 미달한 측량업자에 대하여 즉시 등록취소처분을 하도록 된 원안을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이 법 개정으로 강화된 측량기술자의 보수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측량 실시를 방해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액 50만 원을 타 법과의 균형을 위해서 30만 원으로 인하하였고 기타 미비한 법체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측량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측량법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부의장 최영철 측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1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42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 의원 건설위원회 최영덕 의원입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일부 농어업용 주택 축사 및 창고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 등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단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허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허가에 갈음하여 신고로써 증개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형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설비 구조 및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셋째,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기준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일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끝으로 위법 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에 과태료로 전환하고 위반 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1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지역별 용적률의 구체적 기준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대형 건축물의 관리상태 보고의무 중 방위산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일부 완화하며 기타 미비한 법체제를 정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법상의 지역별 용적률의 대강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원안을 각 지역별 용적률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둘째, 대형 건축물의 관리상태의 보고의무 중 방위산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인 ‘벌금 200만 원’을 ‘과태료 30만 원’으로 전환 완화하고, 기타 미비한 법체제를 정비하여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6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43항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전병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우 의원 건설위원회 전병우 의원입니다.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의 관리방법을 시·도에의 위임관리에서 국가의 직접 관리방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국립공원의 관리와 공원구역 안에서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구역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원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도 그 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자연공원구역 중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복원과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등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세째, 국립공원의 관리방법을 시·도 위임관리에서 국가의 직접관리방법으로 전환하고,

네째,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 등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소위원회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지정절차에 국립공원위원회와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둘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을 각각 도지사나 군수가 관리할 경우 공원관리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세째, 국립공원구역 안에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네째, 국립공원협회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협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안에서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구류 또는 과료로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았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1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44항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한국국민당 소속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한국국민당) 건설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의 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토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이 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며,

둘째, 도시계획구역과 그 인근지역 등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원칙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도록 하고,

셋째,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손실보상대상 구역을 확대하여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직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공유수면도 손실보상대상 구역에 포함시켜 영세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네째, 종전에는 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도로 등 공동용지를 제외한 매립지 전부를 매립자가 취득하던 것을 적정이윤을 포함한 매립사업비 상당분만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고,

다섯째, 매립공사가 준공된 후 5년 이내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며,

여섯째, 이 법 시행 전에 면허가 실효된 매립사업 가운데 사업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면허를 회복시켜 주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1일 제12차 위

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매립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국토이용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보완하고 계획 내용에 매립 우선순위를 추가하였으며,

둘째,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되 공영개발구역 내에서도 민간매립을 합리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매립의 목적 규모 및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잔여매립지를 전부 국가에 환수토록 규정한 원안은 민간매립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라는 공개념과 민간매립 동기 부여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잔여매립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하고,

네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 후 1년 이내에 국가에 귀속된 잔여매립지를 매수청구할 때에는 제한 없이 우선청구권을 인정할 것을 실수요자인 매립자에게만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 시행 전에 매립면허를 받아 준공된 매립지에 대해서도 준공허가일로부터 5년간 용도변경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부의장 최영철**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에서 뒤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15항과 제20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6분)

○**부의장 최영철**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현 의원** 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입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이용관계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에 제정 공포된 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법의 해석 및 적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저작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도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저작자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저작권에 관련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저작물의 예시를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둘째, 외국인저작물의 보호규정을 보완하여 외국인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도록 하되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저작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재산권

을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보호기간을 현행 사망 후 30년까지에서 사망 후 50년까지로 연장하고,

네째,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적인 이용 측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다섯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업 제도를 신설하여 그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여섯째, 현행법의 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기능과 각종 보상금에 관한 심의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1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7인의 위원으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 제1차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1986년 12월 12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소위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저작권 보호에 대한 불소급원칙을 명문화하고 번역권의 법정허락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요건을 신설하여 저작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신설하고 부정출판물의 부수 추정에 음반을 추가하는 등 저작자의 보호 규정과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과 같이 사후 30년까지로 하고 또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중개와 대리업은 등록제로 하여야 하며 시행일은 1988년 1월 1일 이후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교공보위원회)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부의장 최영철 동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한국국민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행히도 많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불참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안전이 무더기 상정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부 야당의 국회 불참으로 인한 텅 빈 본회의장의 모습은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황량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 의회정치의 파탄상을 그대로 보는 듯해서 실로 비탄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될 극한 상황으로까지 오늘의 정치현실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의 반의회적인 독단과 횡포와 변칙 때문이었음을 솔직히 자인하고 이 같은 참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우선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지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말에 정부 여당이 무더기 졸속으로 수많은 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의정유린만은 기필코 막아야겠다는 국민적 책임과 사명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반대토론에 임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이 저작권법이 문화헌법으로

까지 지칭되고 있는 중요한 입법임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우리 당과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부결처리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할 참다운 의의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당과 본 의원이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중요한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 동조와 찬성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소위 한미통상협상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대미외교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저작권법이 1957년 제정된 이래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존치되어 옴으로 해서 이 법률이 갖는 낙후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래서 저작권법의 개정 당위성 그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 여당이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국내에 현실적 필요성에 부응하기보다는 한미 간의 무역마찰을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그 개정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 21일 이루어진 한미통상협상은 대등한 쌍무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굴종이며 항복이었음은 이 자리에 계신 정부 여당 여러분들도 결코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 통상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저작권조약 가입 시기를 강제하고 외국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으로 해라, 벌칙을 강화해라, 심지어는 발효일을 87년 7월로 하라는 등 구체적 개정 내용과 시행일자까지 강요하는 내정간섭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고 우리 정부 또한 이에 굴복함으로써 민족자존을 짓밟았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어서 이번의 저작권법 개정은 특히 동기에 있어서 미국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 이전에 문화적 식민화, 기술의 노예화, 민족정신의 퇴영을 유발할 수 있는 매판적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 동료 의원 여러분!

구한말 타율적인 개방이 일제 식민지화를 초래했고 그것은 또한 민족문화를 말살했으며 한없이 부끄러운 이른바 엽전문화를 조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요구대로 개정되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이 나라 민족문화의 앞날에 중대한 위협

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소홀히 하십니까! 이 법 개정 저지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둘째,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저작권을 완벽하게 보호할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저작권 보호에 관해서는 각국의 형편에 따라서,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못 견뎌서 국가적인 막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외국인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처사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1790년 연방 저작권법을 제정했던 미국도 지금까지 세계저작권조약의 하나인 베른조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 대신 베른조약보다도 외국인 저작권 보호 요건이 약한 세계저작권조약인 UCC의, 그것도 저작권법 제정 후 200년이 지난 55년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인 저작권 보호를 가능한 한 지연하는 등 그들의 국익보호에 만전을 기했음을 우리는 깊이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베른조약 비가입국이면서도 타국에서 자국의 저작권이 베른조약에 의해서 보다 강력히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베른조약 가입국인 캐나다 등지에서 동시출판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베른조약 규정을 악용하고 있음도 우리의 외국인 저작권 보호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현실이 이와 같을진대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해서 우리의 국익을 외면한 채 외국인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권위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도 이 법의 시행일을 미국의 요구대로 87년 7월 초하루로 하고 있는 정부 처사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의 서적들은 판권에 우리나라처럼 발행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행연도만 표시하는 연도표시제가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87년 7월 초하루 시행은 사실상 87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이 개정법이 위헌요소까지 초래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사 이 법이 지금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의 시행일만은 이 같은 위험성을 예방하면

서 새 법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을 갖추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88년 1월 1일 이후로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 그들의 저작권법을 1976년 개정하면서 그 발효는 2년 후인 1978년이었음을 재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외국인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세계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국가적 불이익이나 국내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당국이 취해야 할 당연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불이익을 조장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저작권조약에 가입하면서도 보호기준이 보다 약한 UCC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UCC의 저작권보호기간이 25년인데도 불구하고 베른조약이 요구하는 50년 보호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호기간의 이 같은 장기화가 아무리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우리의 실정으로는 이 같은 장기 보호가 시기상조로서 우리 관료들의 무비판적이며 무사안일한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가능한 한 빨리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자유 이용을 통한 문화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을 감안하면서 저작권보호기간을 현행법에서 규정한 대로 30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중개나 대리업은 정부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정부 개정안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개나 대리업까지도 허가제로 해서 저작권의 이용 상황을 정부가 감독 관리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처사입니다.

오늘날 등록사항조차도 허가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처럼 정부 요구대로 중개 대리업까지 허가제로 한다면 출판의 자유는 크게 탄압 저해될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이 같은 강압적인 정부의 허가제 요구는 거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대리 중개업은 마땅히 자유화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동시발행 규정의 설치나 벌칙 강화도 재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발행되는 외국인의 발행물에 포함해서 이를 보호하는 것은 소위 동시발행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 같은 동시발행 규정은 베른조약에만 있는 규정일 뿐 우리가 가입할 계획으로 있는 UCC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UCC가 인정하지 않는 동시발행 규정을 설정하는 등 일부러 보호 대상을 넓힘으로써 어떠한 경우 UCC 비가입국의 출판물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할 필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리적인 깊은 검토 없이 설정한 이 같은 정부의 무모한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정안은 최고 3년의 체형이나 300만 원의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 역시 동 개정안이 각종 구제조치를 통해서 손해배상 등 충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요구대로 강화시켜 놓은 징역과 벌금형 모두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중벌주의가 일벌백계의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범죄의 대형화 등 역작용을 조장시킬 위험도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연할 필요도 없이 저작권은 우리의 문화기본법으로서 오늘의 저작권법 개정은 모름지기 안으로는 민족문화의 융성과 발전을 기하고 밖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저작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지혜와 슬기를 총망라해서 집결하는 대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이 같은 막중한 저작권법의 개정은 줄속으로 처리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이 미국의 강압에 국내법으로 보완하려는 개악적 입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 같이 재삼 상기하면서 정부의 개정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이 국회가 단호히 거부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취해야 할 당당한 자세임을 함께 다짐해야겠습니다.

우리 당과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이 개정법안이 만장일치 의결되어서 가장 합리적인 저작권법 개정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철** 다음은 김형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의원** 민주정의당 소속 김형호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당 동료 의원께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은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이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통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심사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된 지가 30년이 이미 지났으며 더구나 현행법이 19세기 말 제정된 구 일본저작권법을 모방한 것을 감안할 때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의원님이 동감하실 것으로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의 개정이 외국인 저작권 보호와 직결되고 또한 개정법안의 발효 시기가 내년 7월 1일이라는 점에 대하여 외국인 저작권의 조속한 보호가 이 법 개정의 목적이 아니냐는 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의 근본취지는 외국인 저작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국내 저작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높여 사회와 국가의 문화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목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서 지금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의 반대의견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외국 저작물의 보호 시기가 아직 이르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결과로 생기는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의 지식인들로부터 정신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비도덕적인 국가라는 비난을 감수하여 왔던 것입니다.

국가이익의 주체적인 보호는 우리 정치인들이 견지해야 할 대원칙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의 보호는 한 가지 현상만을 외딴으로 고집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양한 상호관계의 연관성 속에서 고려되고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방화시대에 알맞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적인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본 법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마당에서 국제문화계에서 통용되는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품위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필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175개국 중에서 102개국이 국제저작권조약에 가입하여 외국인의 저작권을 서로 보호해 주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법의 시행일자가 내년 7월 1일부터라고 명기하고 있지마는 외국인 저작권은 분명히 우리가 가입한 조약에 의해 보호되도록 본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조약 가입 시 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어 있지마는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동 조약 발효 이후의 저작물에 국한하도록 단서조항을 둬으로써 소급법적인 요소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동법 시행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상기코자 합니다.

둘째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신문지상을 통하여 저작자와 이용자의 상호상반된 주장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특히 이용자 측인 출판계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법과 같이 30년으로 주장하고 있고 저작자는 최소 50년 이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각각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조약 중 국제저작권협약은 보호기간을 최소 2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베른조약은 최소 5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50년 이상 보호가 75개국에 반하여 50년 미만은 17개국에 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째,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중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이나 신고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여러 저작자의 저작권을 위탁 신탁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등록제로 할 경우 타인의 재산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허가제로 한 것입니다.

중개업에 한정해서 신고제, 등록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역시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법 시행초기에 무자격한 단체나 업자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중개업의 대상이 외국 저작물의 국내 소개업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초기와 같이 외국인이 중개위탁업을 독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허가제로 하여 이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째, 동시발행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국익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행된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은 각국마다 저작물 보호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이나 베른조약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저작권협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으로 국제저작권조약 미가입 국가의 저작물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법안 제3조에서 저작권 상호보호주의를 선언하여서 제삼국이 우리나라 저작물에 상응한 보호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를 보호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저작권 보호로 인한 국가적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개정법안에 불소급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을 제3조제1항 단서조항으로 문교공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입하기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작권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후라도 2, 3년 안의 경제적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지적소유권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번역 로얄티의 지불액은 향후 5년간 약 25억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제수수료는 90년도 34억 원으로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는 복제물이 축소될 전망이므로 사실상 수수료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 문화예술계에 급속한 충격을 주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부담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우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입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을 수정하는 등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법 시행에 있어서 현행법과는 달리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되었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일시적으로 미칠 충격 등을 사전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히 강구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철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은 표결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앞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앞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가 139인, 부 20인, 기권 2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농지임대차관리법안(정부 제출)

(16시17분)

○부의장 최영철 역시 오후회의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20항 농지임대차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의원 농수산위원회 김현욱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지난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임차농지가 전 농지면적에 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 농지개혁 당시에는 8%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 말 현재에는 30.5%로서 그간 매년 증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임차료도 5095억 원에 달하여 농촌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므로 동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농지임대차의 적당한 관리를 위하여 헌법에 따라 농지임대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여 농지임대차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농가의 과도한 임차료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농업생산성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농지를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 하며,

둘째,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임차료는 농지의 생산성과 농작물의 수익성 그리고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임대인이 농지 소재 시·읍·면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위탁경영과 타인을 고용한 영농을 허용토록 하고,

다섯째, 시·구·읍 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에 걸

처 심사한 후 지난 12월 9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에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이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3조 위탁경영 타인을 고용하여 영농한 자가 법에 위반할 경우 당해 농지면적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배 이하로 하였고,

둘째, 안 제24조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금을 3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25조 농지임대차신고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0만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농지임대차관리법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위원회)

농지임대차관리법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농지임대차관리법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안 의원 한국국민당 소속으로 농수산위원인 최용안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안은 영세한 농민을 보호하고 임대차 쌍방 간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에서 제안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 법의 가결에 반대는 하지만 건국 후에 무려 이번까지 합쳐서 여덟 차례나 농지제도에 관한 법률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번번히 실패하다가 이번에 또 이 문제를 다루게 된 데에는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황인성 농수산부장관의 그 농촌에 대한 애착과 또 이 법을 어떻게라도 통과시켜서 농민을 돕겠다고 하는 그 용기에 대하여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이 법안에 대한 견해는 달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당과 함께 농촌의 심각성을 같이 걱정해 주는 의미를 가진 민정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농지제도란 종합체계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농지시책이 담겨질 수 있는 농지법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서 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난날을 반성해 볼 때에 1958년 자유당 때에 1961년의 군정기에 또 196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공화당이 시도를 했던 것이 농지법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1982년에는 농지임차법이고, 이번에 역시 농지임대차관리법안은 불완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농지법이 아닌 농지임대차관리법은 불완전한 법령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입법 자체가 불완전함으로써 우리는 농지법을 전제해서 본 법을 반대하는 것이며 또 오늘날 농촌의 제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농촌문제의 해결의 선행이 없이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에 오히려 농촌은 소작지대화해서 빈곤을 영속화할 우려가 있다라는 농민의 충격을 예방하자는 뜻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당은 민생문제에 역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이 농촌의 심각성에 대하여서 우려한 나머지 이 법의 반대에 나서기로 결론을 하고 또 이를 반대함에 몇 가지 다음의 반증 자료를 들어서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122조에는 소작제도를 법률로 정하여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임차농과 위탁경영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의 사용료를 낮추어 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소작이 아닌 임대차가 되고 토지의 사용료

를 높여 놓으면 이것이 소작이 된다는 개념처럼 이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는 영세농민들이 싼값에 농토를 빌려 지을 수 있는 것은 소작이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작을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현행의 헌법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임대차농으로 합법화해 주려고 하는 저의가 본 법의 제안 사유 속에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농지제도에 전반적 농지시책이 반영되지 아니한 저간의 사례를 들어서는 지금 인접국가인 일본이나 대만이 농지의 사유제도를 허용하면서 임대차농제도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은 1940년대 말로부터 1950년대 초에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일본은 1952년에 농지법을 제정했고 대만은 1955년에 토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후 일본은 세 차례 이 농지법을 개정했는가 하면은, 대만은 농업발전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등 농촌의 농업발전에 관한 제도를 확립했는가 하면은 농촌의 관행과 추세를 수용해서 오늘날 임대차농으로 발전시킨 그 현상과 실정은 우리나라의 농촌과 비견될 수가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전체 농지의 30.5%에 달하는 65만 4000ha의 임대차농지가 발생하고 여기에 비농민 농지는 무려 41만 3000ha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임대차농이 이러한 단순한 하나의 법률로 바로잡힐 수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임대차농이 소작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없애고 공공연한 임대차농이 농촌을 소작지대화한다는 데 본 의원이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아닌 불완전한 제도 입법으로서의 이 법률의 가결을 반대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첫째, 농지의 가격의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산이란 그 사용가치의 평가절하로 그 전체 가격이 하락되는 법입니다.

임대료가 싸진 농지의 가격이 인상될 턱이 없고 농민은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30%의 임대농지의 임대료를 싸게 하자는 조건 때문에 70%의

자작농가의 농지의 가격이 평가절하되는 꼴을 당해야 되고 이와 같은 농촌의 상대적 빈곤은 결국 전반적인 농촌문제 개선에 도움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임대지 회수와 농지투매가 성행하여서 농촌은 농민들이 생산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큰 충격을 농민들이 입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누가 값싼 사용료를 받겠다고 농지를 빌려주겠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의 방식은 그런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노동력과 적정한 사용료의 배분방식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농촌사회에서 서로 용납되고 인정되어 온 상태였습니다마는 행여 이 법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임대료를 싸게 해서 영세농을 보호하겠다는 정신이 임대한 토지를 회수하는 상태로 발전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은 필요 없으니 팔겠다고 한꺼번에 토지를 내놓았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결해 놓은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에 소관된 소위 25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그 투매하겠다는 많은 농지를 사줄 수 있느냐, 빙산의 일각이올시다. 그것으로 불충분할 때 농촌의 충격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의제농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왕 빈집이 있고 버려두고 온 농촌으로 돌아가 귀농하겠다 하면 무슨 법으로 막겠습니까? 또 거기에 음성 임대차가 발생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1949년에 제정된 농지법이 1961년에 대법원의 판례와 1974년의 법무부의 유권적 해석의 시한법으로 사문화된 법이라고는 하지만 등기제도 등에 농지매매증명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매매제도에 의한 농지매매증명발급에 마치 참새는 거미줄을 뚫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처럼 많은 토지투기꾼들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농지개혁법 제19조2항에 있는 조항을 오늘 상정하고 있는 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에 반영을 해서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간에 이 법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의 의지를 상실했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 시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간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위 지방세법 중 재산세에 소관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농민의 농지에 관해서 그 임대료에는 많은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비농민이 농지를 자연히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에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쓰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역시 가결된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안 제188조제1항제1호제4에 명기된 바에 의하면 전답과 과수원에 관한 재산세의 요율은 여전히 과거와 같이 1000분의 1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법을 완전하게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뒷받침이 빈약하다는 것을 충분히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법의 취지가 결코 영세농민을 구제하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입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농지제도의 불완전한 상태하에서 오늘날 우리 농촌이 피폐했기 때문에 농지제도의 확립이 우리 농촌에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는 사실에도 이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법의 그 좋은 취지, 이 본 법이 그 좋은 목적과 명분과는 달리 완전하지 못한 입법이요, 이 시행상에 아직 문제가 있어서 성숙되지 아니한 농촌의 조건들이 개선이 선행돼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본 법의 가결을 반대합니다.

선배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텅 빈 좌석의 이 어려운 국회를 실감하면서 사회 저간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애국심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들이 소속한 정치집단의 정치철학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고 실사 도회지 출신 국회의원들이시라고 할지라도 고향이거나 그분들의 부형의 고향들이 농촌이라는 사실들을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의 반대에 앞서 농촌의 심각한 문제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대하신 성원이 뒤따라야만이 저 어려운 농촌이 잘 앞으로 구제되어서 적어도 이 나라의 경제기반의 확충과 완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본 의원이 주장한 취지는 좋으나 불완전한 입법이고 아직 시행상에 자신감이 없다라는 조건의 미성숙을 전제해서 반대하는 주장에 모두 다 같이 동조해 주셔서 좀 더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철 다음은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민주당의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상정되고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최용안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통해서 본 법안에 대해서 취지만큼은 찬성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좀 빠르고 또 그 시행상의 세칙이 미완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말씀해 하셨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농지가 농업의 목적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된다면 당연히 농지에 대한 투기가 일어나고 농지의 집중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차 농지로서의 가치성이 희박해지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일 수는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에서는 1950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한 이래 농지임법을 추진하고자 일곱 번이나 시도하였으나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여덟 번째로 농지임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1945년도 광복 당시 우리나라의 농지는 65%가 소작지였습니다. 1950년 농지개혁을 실시하면서 소작농은 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35년이 지난 1985년도에 이르러서는 다시 소작농이 30.5%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비농민의 농지투기 성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임차농이 연간 지불하는 임차료는 약 5000억 원 정도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농민의 임차료 부담의 가중을 절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부채지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보장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서 결국은 농지의 기본원리인 경자유전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정책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정부에서부터 제출된 농지임대차관리법안은 농지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농지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122조와 제123조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필요적절한 법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안이 시행된다면,

첫째, 비농민이 농지구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

다. 그리고 두째 번으로서는 임차인의 과도한 임차료 부담은 경감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째 번으로 영세농민인 임차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지구입자금은 1990년도까지 기금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87년도에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2500억 원 중에서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연리 5% 2년 거치 18년 상환의 장기저리로써 대출을 해 준다면 가급적이면 자기 소유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농지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 등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기금의 운용 면에 있어서는 농지기금의 지원과 어선대치 및 수산증식사업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제농민이 발생해서 음성 임대차가 발생할 것으로서 염려된다고 최 의원님께서 심히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본 법안에 있어서도 이 벌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민이 더 많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세제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임대차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경자유전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본 농지임대차관리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특히 영세한 임차농민에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부채지주의 소유권을 보장하여 임대차 영농이 쌍방이 안정적 영농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본 법안을 여러 의원님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찬성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철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역시 국회법 제105조제1항에 의해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지임대차관리법안에 대해서 찬

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1인 중 가 138인, 부 22인, 기권 1인입니다.

이로써 농지임대차관리법안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제출)

(16시45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45항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이신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직 의원 한국국민당 소속 외무위원회 조용직입니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지난 86년 9월 15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6년 9월 16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 개최된 제9차 위원회에서 상기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약 당사국 간에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당사국 상호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협약체결국의 대한 투자와 기술 진출을 촉진케 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오스트리아 진출을 지원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 협약의 요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상 조세는 아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이고 상대국인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자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자본세 토지세로서 조세의 명칭은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소득에 대한 조세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종래에는 이들 대상 조세에 대하여 상대국뿐만이 아니라 자국에서도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형태를 취해 왔으나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으로서 이미 아국이 24개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과 같은 종류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협약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잠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와 기술의 유치 및 아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이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본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 원안 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참 조)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외무위원회)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

○부위원장 최영철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은 정부가 제출한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의안이므로 내일 본회의에서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정부 제출) (16시50분)

○부위원장 최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광정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출 의원 재무위원회 광정출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당초에 1986년 10월 31일 자로 총 규모 8억 8500만 불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FMS 차관이 취소됨에 따라 동년 12월 3일 자로 동의안의 규모를 7억 2000만 불로 감액 수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 공공차관은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및 기타 경제협력기구로부터 도입하여 주택 도로 도시개발 상하수도 농업 기술개발 교육 의료 등 경제·사회 개발 주요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주택 10만 호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 기금지원사업에 1억 5000만 불,

둘째, 국도 포장 및 확장을 위한 ADB 도로부문사업에 1억 불,

셋째,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3000만 불,

넷째, 수도권지역의 교통난을 효과적으로 분산 처리하기 위한 경기지역종합교통망건설사업에 1억 2300만 불,

다섯째, 대구시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구시내 고속화도로건설사업에 3000만 불,

여섯째, 울산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한 철도이설사업에 3000만 불,

일곱째로 부산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5000만 불,

여덟째, 대학원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의 교육시설용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4000만 불,

아홉째, 5개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이전 신설에 따른 의료시설확충사업에 3800만 불,

열째, 유전공학 연구, 기계 연구, 화학 연구, 반도체, 공용기술지원용 기자재 구입에 1800만 불,

열한 번째로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건설사업에 1000만 불,

열두 번째로 제주·청주·대구시의 하수처리건설사업에 5100만 불,

열세 번째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전대차관용으로 5000만 불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 조)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외무위원회)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정부)
(부록 2에 실음)

.....

○부의장 최영철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7.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 48.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 49.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50.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51.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52.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16시56분)

○부의장 최영철 의사일정 제48항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영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득 의원 재무위원회의 임영득 의원입니다.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및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등 6개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동의안은 198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6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중화학공업 등 정책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40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계획이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35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0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 소화하는 것입니다.

(최영철 부의장, 이재형 의장과 사회교대)

세째,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첨가 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이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35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네째,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증발되는 통화를 흡수하는 한편 외국환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1조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동 기금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3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은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125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정부)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정부)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정부)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정부)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정부)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정부)

(이상 6건 부록 2에 실음)

.....

○의장 이재형 6건의 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한 건 한 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제출)

54.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55.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17시6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54항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1987년도 발행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영구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의원 재무위원회 김영구 의원입니다.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개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동의안은 198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3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데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는 한편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국가

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채권의 2종을 발행할 계획인바 원화표시채권 발행한도액은 90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자 하며 외화표시채권은 발행한도액 미화 4억 달러 상당액 이내,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 연 12% 이하,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 기준금리 플러스 0.5% 이하, 상환기간은 30년 이내로 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주택은행이 서민의 민영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국가가 그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동 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5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대행기관으로 비료를 공급함에 있어 1987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함에 따른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서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한도액은 62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이상 3건 부록 2에 실음)

○의장 이재형 일괄 상정한 3건의 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1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 의원 수(169인)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광수
재무부장관	정인용
법무부장관	김성기
문교부장관	손제석
농수산부장관	황인성
상공부장관	나옹배
건설부장관	이규효
노동부장관	이현기
교통부장관	차규현
문화공보부장관	이응희
총무처장관	정관용
과학기술처장관	이태섭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이상희
상공부차관	홍성좌
보건사회부차관	최수일
교통부차관	류홍수

【보고사항】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지정

상공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김두중

12월 9일부터 위원장 선임 시까지

(12월 9일 자)

○의안 제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안

(12월 10일 이진 의원·임두빈 의원 외 40인 발의)

발의자 이진 임두빈

찬성자 강경식곽정출 김기배

김식 김영구 김용태

김종기 김종인 김종호

김현욱 나옹배 유경현

박규식 박종문 박준병

배명국 徐廷華 송용식

신상식 심정구 안병규

염길정 오한구 이대순

이상재 이용호 이재우

이철우 임영득 장성만

전종천 정선호 정재철

정종택 정호근 정휘동

조기상 조상래 조종호

홍종욱

12월 10일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12월 10일 정부 제출)

12월 11일 재무위원회에 회부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12월 10일 정부 제출)

12월 11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1987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수정동의안

(12월 3일 정부 제출)

12월 4일 재무위원회에 회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2월 16일 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의원 제출)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2월 16일 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제출)
최저임금법안(대안)

(12월 16일 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제출)

○의안 심사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11월 14일 정부 제출)

(12월 13일 법제사법위원장 류상호 보고)
수정 의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8월 19일 정부 제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0월 10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13일 내무위원장 권정달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5일 정부 제출)

(12월 15일 내무위원장 권정달 보고)
수정 의결

도서개발촉진법안

(11월 27일 김재호 의원·정시채 의원·조기상 의원·박경석 의원·김현욱 의원·고건 의원 외 39인 발의)

(12월 15일 내무위원장 권정달 보고)
원안대로 의결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6월 14일 정부 제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12월 10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16일 재무위원장 김용태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표준시에관한법률안

(9월 22일 정부 제출)

(12월 15일 경제과학위원장 오한구 보고)
원안대로 의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

(11월 1일 정부 제출)

(12월 15일 경제과학위원장 오한구 보고)
수정 의결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9일 이민섭 의원 외 33인 발의)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12월 10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16일 문교공보위원장 박권흠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10월 20일 정부 제출)

(12월 16일 문교공보위원장 박권흠 보고)
수정 의결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5월 25일 정부 제출)

(12월 16일 문교공보위원장 박권흠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안

(11월 7일 정부 제출)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8일 정부 제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1월 28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15일 농수산위원장 김식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11월 14일 정부 제출)

(12월 15일 농수산위원장 김식 보고)
수정 의결

농지임대차관리법안

(11월 7일 정부 제출)

(12월 16일 농수산위원장 김식 보고)
수정 의결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10월 6일 정부 제출)

대외무역법안

도·소매업진흥법안

(이상 2건 11월 1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15일 상공위원장직무대리 김두중 보고)

이상 3건 수정 의결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

(11월 1일 정부 제출)

(12월 16일 상공위원장직무대리 김두중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
 (11월 7일 정부 제출)
 (12월 16일 상공위원장직무대리 김두중 보고)
 수정 의결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
 (11월 22일 정부 제출)
 (12월 15일 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보고)
 원안대로 의결
폐기물관리법안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1월 19일 정부 제출)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0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15일 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보고)
 수정 의결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3월 29일 권중동 의원 외 36인 발의)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
 (85년 11월 29일 김완태 의원 외 101인 발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85년 12월 13일 함중한 의원 외 20인 발의)
 (이상 3건 12월 15일 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보고)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3월 29일 강창희 의원 외 36인 발의)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85년 11월 1일 김정수 의원 외 101인 발의)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85년 12월 1일 강경식 의원 외 20인 발의)
 (이상 3건 12월 15일 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보고)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
최저임금법안
 (11월 19일 강창희 의원 외 36인 발의)
최저임금법안
 (10월 23일 심완구 의원 외 88인 발의)
최저임금법안
 (3월 11일 정시봉 의원 외 20인 발의)
 (이상 3건 12월 15일 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보고)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일 정부 제출)
 (12월 15일 교통체신위원장 양창식 보고)
 원안대로 의결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일 정부 제출)
해상교통안전법안
도선법 개정법률안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
 (이상 4건 11월 17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12월 15일 교통체신위원장 양창식 보고)
 이상 5건 수정 의결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1월 24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16일 교통체신위원장 양창식 보고)
 이상 2건 수정 의결
측량법 개정법률안
 (11월 1일 정부 제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27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16일 건설위원장 박익주 보고)
 이상 4건 수정 의결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9월 15일 정부 제출)
제법 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11월 12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15일 외무위원장 봉두완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87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10월 31일 정부 제출)

-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 1987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 1987년도 농어촌개발채권 발행동의안
-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9건 11월 20일 정부 제출)
 (이상 10건 12월 12일 재무위원장 김용태 보고)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청원 제출

민법(친족·상속편)개정에 관한 청원

(12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43-62 허옥자 외 150인으로부터 이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현행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전근대적이고 불공평한 조항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의 개정을 바람.
2. 불평등하고 전근대적인 민법 규정으로서 시정 및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 ①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의 친권우선 인정 규정
 - ②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미비
 - ③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
 - ④ 남계혈족중심의 호주제도
 - ⑤ 친족범위에 있어 부계와 모계의 차별 규정
 - ⑥ 적모와 서자의 관계
 - ⑦ 상속권 차별적용 규정
 - ⑧ 아내에 대한 상속세 부과 등 위와 같이 민주정신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개정하여 남녀평등과 민주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임.

민법(친족·상속편)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

(12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2호 가족법개정저지범국민운동협의회 회장 안호상 외 112만 3449인으로부터 채문식

의원 외 36인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1986년 11월 18일 김영정 의원 외 58인이 제출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정의 미덕과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켜 나갈 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함.
2. 우리의 민족문화는 한 집안의 전통적인 도덕과 미풍양속 그리고 윤리와 예의를 바탕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는바 가정의 위계 질서와 분쟁 방지, 씨족의 번창, 이혼의 억제, 조상숭배, 충효사상, 가통계승 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민족의 고유관습을 권장 발전시켜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민법 중 친족·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과 윤리의 타락으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의 우려가 있음.
3.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은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청원임.

소개의원	정석모	김영선	정선호
	이상익	이범준	전종천
	오한구	최영덕	조상래
	강창희	남재두	천영성
	홍종욱	이대순	전병우
	고 건	구용상	권영우
	이영권	이진연	허경만
	권오태	반형식	최락도
	유준상	송천영	김완태
	김봉욱	고재청	김봉호
	이대엽	신민선	김효영
	최재구	정재원	이용택

이상 2건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청원

(12월 16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660-18 신촌사료(주) 대표이사 김용태 외 25인 으로부터 김성식 의원·신순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휴·폐업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 배합사료 제조업자의 보호 육성과 양축농가의 권익을 위하여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설립의 인가를 바람.
2.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제조업은 중소기업체에 의해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어 그간 25년에 걸쳐 고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면서 양축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기업과 재벌기업이 대거 참여하게 되어 자금·인력·경영능력 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판매 부진으로 휴·폐업체가 속출하고 시장점유율이 크게 잠식당하여 존립 위기에 처해 있는바 대기업과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술혁신과 품질향상 그리고 생산성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키 위한 협동조합의 조속한 설립이 절실히 요망되어 농수산부에 조합 설립을 신청하였으나 인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3. 배합사료 중소제조업자들의 숙원이며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자구책인 한국배합사료 공업협동조합의 조속한 인가를 바라는 내용임.

12월 17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

○청원 철회

천수만 연안 해태양식장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4월 11일 충남 서산군 안면읍 승언리 6구 276 류병돈 외 865인으로부터 김현욱 의원의 소개로 제출)

부당과세 시정에 관한 청원

(8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2동 602번지 자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동수로부터 최상진 의원·신재휴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2월 13일 청원인과 소개의원 요구로 철회됨.

○청원 심사

소형선박 및 예인선의 바다낚시대선영업 양성화에 관한 청원

(8월 4일 인천직할시 동구 만석동 6번지 양청일 외 33인으로부터 박왕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13일 내무위원장 권정달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장기저리자금 융자약정 이행에 관한 청원

(12월 5일 전남 목포시 대의동2가 1번지의 25 박정준으로부터 김봉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안면도 해태양식장 피해보상의 부당한 배분방법 및 보상금액 시정에 관한 청원

(6월 25일 충남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 5번지 추상엽 외 60인으로부터 장기욱 의원 외 5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2월 15일 농수산위원장 김식 보고)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 시범APT 5동 101호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위원장 방용석으로부터 김완태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5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2번지 32호 류현석 외 23인으로부터 박찬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9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인으로부터 권중동 의원·강창희 의원·이영욱 의원의 소개로 제출)

최저임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인으로부터 권중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4건 12월 15일 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보고)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의원 사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사망 연월일
윤국노	안양·광명 시흥·옹진	민주정의당	1986. 12. 9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민주정의당

윤국노

(12월 9일 자)